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2.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년 12월 17일, 정부 제출

나. 회 부 일 자: 2024년 12월 1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25.7.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
위원회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2026.2.4.)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1차 전체회의(2026.2.6.)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
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정부제출)

법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3천원 미만의 소액인 배출부과금의 징수 면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개정안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통합관리사업장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부과하는 배출부과금으로 징수할 금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배출부과금의 감면) (생략) <u><신설></u>	제16조(배출부과금의 감면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u>배출부과금으로 징수할 금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u>

현행법¹⁾에서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으로서 먼지, 질소산화

1)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제6조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에 대한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물 및 황산화물을 연간 20톤 이상 발생하거나 폐수를 일일 700m³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환경부장관에게 통합허가를 받도록 하고, 통합관리 사업장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에 대한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등의 개별법에 우선하여 동 법을 적용하도록 함.

현행법 제15조²⁾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또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악취방지법」,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제1항, 「물환경보전법」 제47조제1항 또는 「소음·진동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통합허가) 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하 “통합관리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배출시설등(제1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배출시설등만 해당한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적용시기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의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정할 수 있다.

1.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이 연간 20톤 이상 발생하는 사업장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의 폐수를 일일 700세제곱미터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변경허가 사항 외의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이하 “허가조건”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배출시설등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환경오염을 예방하거나 오염물질을 감소·제거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명령의 이행과 관련된 내용을 허가조건에 포함할 수 있다.

1.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오염토양의 정화명령
2. 「지하수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명령
3. 환경오염 예방 및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명령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령

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배출부과금의 부과·징수) ① 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한다.

1.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또는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또는 제2조제2호사목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을 설치·변경한 자

② 배출부과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과되, 그 산정방법과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기본배출부과금

가.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허가배출기준(허가배출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4조제4항에 따른 최대배출기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하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

나.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허가배출기준 이하로 배출되거나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

2. 초과배출부과금: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또는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과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허가배출기준 초과 여부

사업자 등에게 환경부장관이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현행법 제16조³⁾에서는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등 특수한 경우에 배출부과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환경부훈령인 「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⁴⁾에 따르면, 「물환경보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합계액이 3천원 미만일 때에는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하도록 최저한도를 두고 있는데, 현행법에 따른 통합허가사업장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해서는 배출부과금을 감면할 수 있다는 근거만 마련되어 있고 소액의 배출부과금 면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등의 종류
 3. 오염물질등의 배출기간
 4. 오염물질등의 배출량
 5.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自家測定) 여부
 6. 그 밖에 대기 및 수질 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환경부장관은 배출부과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준용한다.
- ⑤ 배출부과금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 ⑥ 환경부장관은 배출부과금이나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3)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배출부과금의 감면)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에 따른 사업자에 대한 배출부과금의 감면은 해당 법률에 따라 부담한 처리비용의 금액 이내로 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2.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2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3.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하의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5.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총량관리사업자
 6. 다른 법률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또는 수질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자
- 4) 「**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4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하 "부과금"이라 한다)의 징수 및 환급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과금 사무처리를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8조(부과금액의 단수계산 및 최저한)** ① 부과금 또는 가산금을 부과할 때에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② 고지할 부과금,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합계액이 3천원미만일 때에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에 개정안은 배출부과금으로 징수할 금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⁵⁾에 따라 부담금 납부의무의 면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국민의 권익을 보다 명확히 보호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타당하다고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생 략

6.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 음

8. 기타사항

5)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부담금 부과와 원칙) ⑤ 부담금의 부과, 감면, 납부방법 및 환급 절차에 관하여는 해당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되, 현금,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없 음